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내규

2022.12.30. 개정

##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칙과 내규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교육과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입학전형)

- 가. 신입생은 매년 전·후기에 나누어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신입생은 서류심사와 필요시 구술시험을 통하여 선발한다.
- 다. 입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입시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 제 3 조 (지도교수 배정 및 변경)

- 가. 구술시험 후 지도교수가 배정된 시점부터 한 학기를 이수하기 전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그 의사를 주임교수와 상의하고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별표 1]의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가 변경을 승인한다.
- 다. 지도교수의 동의가 없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 시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 제 4 조 (수료인정 및 이수학점)

- 가.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단, 21학점 이상은 식품영양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단, 9학점 이상은 식품영양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다.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단, 36학점 이상은 식품영양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 제 5 조 (필수과목)

- 가. 2020년 1학기 입학생부터 세미나를 필수로 수강하지 않아도 되며, 2020년 1학기 이후 졸업예정자들에게도 소급해 적용한다.
- 나.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들은 '연구윤리'를 필수로 이수(청강, Pass)하여야 한다.

## 제 6 조 (과목 공유)

- 가. 본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일반대학원 과목 중 [별표 2]의 과목은 식품영양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인정한다.
- 나. 이 조항은 2020년 1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 7 조 (자격시험)

### 가. 종합시험

#### 1. 석사학위과정

- ① 응시자격 : 학기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학기 이상 이수 예정이며 18학점 이상 이수 예정인 자
- ② 응시절차 : 응시 원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를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
- ③ 시험일자 :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 학기말(6월말, 12월말)에 실시
- ④ 시험방법 : 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최소 3인 이상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종합시험 응시 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2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 2. 박사학위과정

- ① 응시자격 : 학기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② 응시절차 : 응시 원서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를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
- ③ 시험일자 :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 학기말(6월말, 12월말)에 실시
- ④ 시험방법 : 구술시험으로 진행한다. 심사위원은 식품영양학과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 종합시험 응시 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2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 3. 석·박사 통합과정

- ①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② 석·박사 통합과정을 중단하고 석사로 졸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원의 통합과정 중단 승인을 받은 후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 나. 외국어시험

1.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 학기까지 아래 점수 이상의 기간이 유효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할 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구분	TOEFL			TOEIC	TEPS	IELTS
	PBT	CBT	IBT			
점수	500	173	61	650	297	5.0

2. 단,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이 상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제출 이전 학기까지 해당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에 제출하면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자인 박사학위과정 학생일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였으므로 박사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이수하고 평가항목(총 100%)에 대해 전체 백분위 80% 이상을 획득 후 이수증을 제출할 시,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 제 8 조 (연구계획)

### 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나. 단,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을 발표하고 연구계획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구계획 발표는 구두 발표 등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지도교수가 정한다. 연구계획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한 식품영양학과 전임교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제 9 조 (논문지도 및 심사 절차)

- 가.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학기 이상 연구지도 교과목 수강을 통해 연구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나. 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박사학위과정 학생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기 포함하여 2학기 이상 연구지도 교과목 수강을 통해 연구지도를 받은 후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다.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 전에 학위논문 표절여부를 검증하고 지도교수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 제 10 조 (연구내용공표)

- 가. 2018년 2학기 이전에 입학한 석사졸업예정자의 경우는 학술진흥재단 등록 학술지에, 박사졸업예정자의 경우는 국제학술지 1, 2등급 저널에 논문 본심 전에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일시는 2007년 3월 석·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나. 2018년 2학기 입학생부터는 졸업 전에 아래를 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이학계열 석사졸업예정자의 경우
    - SCIE급 학술지 논문 1편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투고
  - ② 이학계열 박사졸업예정자의 경우
    - SCIE급 학술지 논문 1편(Impact factor 3 이상)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게재하거나 게재 허락(accepted) 또는
    - SCIE급 학술지 논문 2편(Impact factor 3 미만)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게재하거나 게재 허락(accepted)
  - ③ 사회과학계열 석사졸업예정자의 경우
    -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연구내용 1회 발표, 그리고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논문 1편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투고
  - ④ 사회과학계열 박사졸업예정자의 경우
    - 학술대회에서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연구내용 2회 발표 (단, 1회는 반드시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논문 1편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게재, 그리고
    - 국제1, 2등급 학술지 논문 1편을 제1저자(또는 주저자)로 투고
  - ⑤ 단, 석사 5학기 이상 졸업예정자는 예외적으로 교수회의를 통해 의결한다.

## 제 11 조 (학생설계전공)

- 가.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2학기 이상 재학생은 대학원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학생설계전공 신청서를 행정팀으로 제출함으로써 학생설계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나. 학과 대학원위원회(또는 교수회의로 같음)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생설계전공의 타당성, 학업 계획, 이수 예정과목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라. 학생설계전공 학생은 학과 대학원위원회에서 승인한 소정의 과목 이수 및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학위과정 졸업요건과 별개로 한다.
- 마. 학생설계전공의 이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신청기간 내에 학생설계전공 이수포기 신청서를 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과 내규에 규정된 졸업요건에 따라 잔여 학위과정을 이수한다.
- 바. 이외의 사항은 대학원의 학생설계전공 제도 운영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 부 칙

- 가.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8조 나항은 2020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나.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9조 다항은 2021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다.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0조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라.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5조 나항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하며, 기 입학생들도 소급해 적용한다.

마.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1조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하며, 기 승인자들도 소급해 적용한다.

개정 2018.11.30.

개정 2019.02.26.

개정 2019.09.11.

개정 2019.10.29.

개정 2019.11.18.

개정 2020.01.17.

개정 2020.04.29.

개정 2022.12.30.

개정 2020.08.17.

개정 2020.11.17.

개정 2020.12.10.

개정 2021.06.07.

개정 2021.08.21.

개정 2021.09.14.

개정 2022.08.08.

전면 개정 2022.09.01.

[별표 1]

###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지도교수 변경 절차

1. 지도교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별표 1-1]’ 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2. 주임교수는 현 지도교수와 상담 후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학생에게 지도교수 변경을 위한 학과소속 교수들과의 면담을 허락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도교수 변경을 위한 면담을 허락한다.
3. 학생은 면담을 통해 변경할 지도교수를 정한 후 ‘지도교수 변경 승인서[별표 1-2]’ 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 지도교수(연구실) 변경신청서

학 과 :	
성 명 :	학 번 :
과 정 :	학 기 :
(변경전) 지도교수 :	(변경후) 희망지도교수 :
연락처 (H.P) :	e-mail :

상기 본인은 \_\_\_\_\_의 사유로 지도교수(연구실)를 변경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현 지도교수 성명 : (서명)

변경 지도교수 성명 : (서명)

식품영양학과 주임교수 : (서명)

## 지도교수 변경 승인서

\_\_\_\_\_의 사유로 000교수의 지도학생인 00과정 000학생(학번) 지도교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구분	지도교수	교원번호	논문심사위원
기존			
변경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주임교수 000

(서명 또는 직인)

[별표 2]

식품영양학과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타 학과 일반대학원 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정번호	개설학과
1	세포신호와질병1	OBM7012	융합오믹스·의생명과학 협동과정
2	바이오산업기술특론	LSB7010	생명과학부공통
3	데이터툴링	HEC5001	생활과학대학공통